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일 시	2014. 10. 20(월) 15:00 ~ 16:20
장 소	군청회의실
참석위원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내용	① 월정수당 심의 ② 제3차 회의 일정 결정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1차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14. 10. 20.

작 성 자 안 성 필

위 원 장 김 종 철

제 2 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2014년 10월 20일(월) 15:00~16:20

【 심의안건 】

- ① 월정수당 심의
- ②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심의결과 】

- ① 다음 회의에서 결정
- ② 3차 회의 일정 : 2014. 10. 28(화) 10:00, 군청회의실

■ **위원장** : 반갑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위치가 군민들을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책정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시다만 자료에 의해서 정책기획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정책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시군 자료를 보니 결정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행부 월정지급 기준액과 시군 책정된 의정비에 대한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 1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의회에서 활동을 안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신문을 보니 건축재정에 대한 내용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지속해서 상승하 것과 의원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

는 수당을 주면서 일을 하게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이하로 인상하면 오늘 종결되고, 1.7% 이상이 되면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실적 의회에 자료를 받아서 배부>

- **이창선** : 월정수당을 말고 회의수당이나 출장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 의회에 참석해서 받는 수당은 없고 여비는 출장을 갈 때 만 받습니다.

- **이황석** :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인데 의정활동비는 한번도 인상이 안되었는데 맞습니까?

- **정책기획팀장**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6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전국 동일한 안행부 기준액입니다.

- **강창영** : 시군별 자료를 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1차 회의때 이황석 위원이 2015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고 의원들도 새롭게 구성되었으니까, 의회에 일을 시킬 수 있도록 2016~2018년 월정수당은 격년제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강창영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하향조정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겠습니다.

- **류창봉** : 위원여러분께서 월정수당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인상하는 쪽에 동의를 하고, 타시군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황석** : 위원장님의 주민 여론 수렴을 하자는 제안에 따른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나 냉담하였고 의회를 불신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합천군 다음으로 적게 받고 있고 5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 2011년부터 5년간 13.1%(11년 5.1%, 12년도 3.5%, 13년도 2.8%, 14년도 1.7%) 보수가 인상되었습니다. 의회의 참신하고 본연의 의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 **하청두** : 저는 동결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월정수당을 보수의 성격으로 본다면 작습니다만 순수하게 의정 활동에 드는 비용이라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명예직이고 무보수였습니다. 지금 받는 월정수당을 동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월정수당은 보수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 저는 하청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차 회의를 마치고 친지, 후배들에게 의정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모두들 인상을 반대하였습니다. 남해신문의 기사도 참고를 해보니, 대다수의 군민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 의정비를 인상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세비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추세인데 남해군도 이런 추세에 따라 동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서정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결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 하향 조정이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위원일동 <네>**

■ **위원장** : 그럼 하향조정을 하자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규진** : 저도 하청두 위원이 제안한 동결의견에 찬성합니다. 지난주 상공협의회 회의가 있어 의견을 교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회원들이 2015년 월정수당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현안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면 연간 30만원 정도인데 다음기회에 인상을 하려면 합니다.

■ **이창선** : 저도 동결에 찬성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에서 남해군의회가 의안발의가 꼴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90회 정도 회의를 한 것도 그렇고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 동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정책기획팀장** : 의회에서 보낸 공공문을 보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최대 20%에서 '15년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특정하고, 동일한 범위에서 16~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다르게 반영하였으면 함』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 **위원장** : 오늘자 남해시대 기사를 보니 의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난 4~5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됐다면 이번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이라도 인상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구재모** : 여론조사는 며칠 걸립니까?

■ **정책기획팀장** : 8일정도 걸립니다.

■ **구재모** : 그러면 시간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팀장** : 예. 10월말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 시간은 충분한데 다만 여론조사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에만 단드시 실시합니다.

■ **구재모** : 동결을 선택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여론조사를 하여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201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 **서경순** : 저도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 동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양쪽으로 의견이 나오는데 의회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서정길** :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위원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 **위원장** : 2015년 동결하면 2016~2018년도 동결되어야 합니까?

■ **정책기획팀장** :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결정금액으로 2016~2018년도는 동결하든지 인상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청두** : 의원님들이 의정비에 목매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정비는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이황석** : 조금 헛갈립니다. 정책기획팀장님 다시 설명 해주십시오.

■ **정책기획팀장**

<자료 설명>

■ **위원장** : 월정수당을 결정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 즉 7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 더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황석** : 오늘 어떤 방법이라도 한가지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2015년과 '16~'18년 월정

수당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오늘 결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서정길** : 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2015년결정을 하고 16~18년 결정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한번 더 모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규진** : 2018년까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합시다. 다음주 월요일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들 간 날짜 논의>

■ **위원장** : 다음주 화요일 10월 28일 10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